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과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향과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방안
5.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